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일본 사태를 호기로

“어느 날 주인이 복욕하러 가자고 했다. 그때 어린 이숙은 ‘주인님!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니 먼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화를 냈다. 복욕할 앞에 박힌 뽕죽만 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등 다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치우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다가 넘어질 뻔했다. ‘무슨 돌이 박혀 있지? 크게 다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 돌을 뽑아버렸다. 그런 후 들어갔다. 그때 이숙도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인에게 갔다. ‘주인님!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어서 가시죠.’ 하고서 함께 갔다. 하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복욕탕에 있는 것을 보고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한 명밖에 없

다고 했느냐?’ 하고 물었다. 어린 이숙은 ‘주인님!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위험한 돌맹이를 뽑고 들어간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숙우화의 한 토막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산다고 모두 진정한 사람은 아니다. 작금의 우리들 사회, 물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가없이 탐욕스런 욕심 때문이다. 요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때문에 난리다. 진정 이 정도의 예견도 못했던 말인가. 자고로 남에게는 고통을 맡기지 말라고 했다. 언제든지 말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배만 불러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가. 국민들이나 중

소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다.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상속문제는 또 어떤가. 천문학적 부를 누리면서도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은가. 시중에서 회자되는 말도 모르는가.

‘돈 많은 이00 회장은 지금 라면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말이다.

이런 현상이 큰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힘들게 투병 생활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얘기가기는 하지만.

지금 일본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불화수소다.

그런데 이미 8년 전에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일본의 순도 99.999%(파이브나인)보다 훨씬 높은 99.99999999%라는 ‘텐나인’ 특허를

2011년에

그런데도 생산을 못했다. 판로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시설 투자비는 50억~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 는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지금 안달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들과 상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상대나 했겠는가. 일본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지만 앞서 말했듯은가. 공간은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의 실력자들은 모두 우리의 공간이다. 비단 이것뿐이겠는가.

건설사를 비롯 각종 임찰 등등의 먹이사슬에서 벗어난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기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책은 정지권도 갈아 치워야 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깊고 넓게 퍼져 있는 부정적 요인들을 도려내 보란 말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변혁의 기회를 일본이 대신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영원히 안 울지도 모르니까. 복욕탕 앞에 박힌 뽕죽 한 돌을 뽑을 때, 바로 지금이다.

社 說

피의자 방어권 강화해야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이 통지된다니 인권개선 차원에서 기대가 크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 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지시를 내리도록 이 사실을 알

리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 당사자의 신분과 규정에 따라 수사단계별 진행 상황을 통지해왔다. 다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을 경우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 출석을 요청했지만, 영장 신청이나 청구 사실은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보완 지시가 내려올 경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 변호인 통지를 꺼려왔다.

하지만 인권 측면에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구공정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 인권위의 판단이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실 변호인 통지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인식개선으로 근절하자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시 충격 등으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등이 강화되면서 가법성이 충분한 행위임에도 해당행위에 대한 법률 미비로 처벌할 수 없는 성범죄 유형도 처벌되도록 보완이 되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성적목적 등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피서지 등에서 어떤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와 촬영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성범죄관련 처벌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해 후 조치도 더욱 중요하다. 경찰청 성폭력피해 지원조치 요령에 의하면 피해 후 바로 112신고나 성폭력 긴급전화 1366과 one-stop 지원센터(1899-3075) 또는 지역별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해 상담을 받고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길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즉시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검사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또한 신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일을 위해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폭행당시의 옷차림으로 몸을 씻지 않고 즉시 병원으로 가고 적어도 72시간 이내에 가야 체모, 정액 등 법적인 증거물 채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세부적인 특징, 사건 경위, 내용, 시간, 날짜, 장소를 자세히 기록하거나 녹음해두고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은 종이가방에 넣어 증거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가해자 보복이나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이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케어

팀을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해를 가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여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전문 보호, 지원단체와 연계해 주는 등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심리평가,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 등에 대한 위중함을 우리 모든 사회구성원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내 행동이 잘못 되었을까?’ 라는 생각, 주변사람들은 ‘네가 여지를 준 것 아니냐?’ 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적극적인 증거확보로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 사회적 시스템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박영환 / 함평경찰서 경무과 경위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평 알로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기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